#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67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달희·유영하·성일종

김상훈 · 김소희 · 김기현

조지연 · 김정재 · 서범수

정동만 · 엄태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과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범죄 대상이 주로 연예인 등 공인이었음에 반해, 최근의 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문제의 심각성이 큼. 더욱이 일반인 중에서도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함.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하여 더 죄 질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 요에 대한 더 중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의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